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부서)의 장
람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6-37호
2026. 8. 7.(금)

차 례

고 시(1)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고시 제2026-63호) 1

공 고(5)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6-862호) 2
-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사전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6-867호) 7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6-872호) 9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874호) 1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880호) 29

공 람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6-63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건물번호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	
			사 유	고시일
신탄진동 806번지	신탄진로738번길 186	건물신축	신탄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3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10. 4. 20.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누리집\) \(juso.go.kr\)](http://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2026. 8. 7. ~ 8. 21. (14일간)

4. 공고대상: 별첨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자원농생명과(☎042-608-683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서의 경우, 2026. 9. 7.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 부과금액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

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부과통지서의 경우, 납부기한(2026. 9. 30.)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 및 이후 매월 1.2%의 증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덕구 자원농생명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독촉고지서의 경우, 납부기한(2026. 9. 30.)까지 가산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월 1.2%의 증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마.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농생명과(☎042-608-6834)

[별첨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감경액)	반송사유
유*완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1158번길 113, 20*동 90*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50,000 (40,000)	폐문부재

[별첨2]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과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신*민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서로 709, 10*동 260*호	담배꽂초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김*봉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18*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이*완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로8번길 60, 20*호	담배꽂초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노*규	대전광역시 동구 동산초교로 34, 10*동 80*호	담배꽂초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김*송	대전광역시 동구 현암로 15-*, *층	담배꽂초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MIRZAKHME**** NOZIMA****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도비산1길 39-25, *동 40*호	담배꽂초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별첨3]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유*철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1730번길 1*	담배꽂초 불법투기	52,100	폐문부재
강*귀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46번길 120, 20*동 50*호	담배꽂초 불법투기	52,100	폐문부재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사전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517번지(구거) 외 1필지 내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유한 행위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28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및 주소지 부재로 인한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 고 명: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7. ~ 2026. 8. 21.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28조
5. 공시송달 내역

연 번	소재지	행위자	주소	점유내용	점유면적(㎡)	비 고
1	읍내동 517	미상	미상	무단경작	65	
2	읍내동 517	장*철	미상	물건적치 및 가설건축물	64	
3	평촌동 508-2	미상	미상	무단경작	27	

6. 원상회복기한 : 2026. 8. 21. 까지

7. 공고내용

-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법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

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자원농생명과(☎042-608-69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 가. 과태료 부과: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같은 법 제16조
 -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2026. 8. 7. ~ 8. 21. (14일간)
4. 공고대상: 별첨
5. 공시송달 내용
 - 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환경과 (☎042-608-6866)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사전통지서의 경우, 2026. 9. 4.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 부과금액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부과통지서의 경우, 납부기한(26.3.31.)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덕구 환경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라. 독촉고지서의 경우 납부기한(26.3.31.)까지 가산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월 1.2%의 증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마. 아울러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042-608-6866)

[별첨1]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감경액)	반송사유
이*섭	183서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17, 50*호(범어동)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80,000)	폐문부재
홍*표	31소8***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로 37, 1**동 1***호(목동, 목양마을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100,000 (80,000)	폐문부재
전*기	249더9***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564번길 39-**, 20*호(중리동)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80,000)	폐문부재
송*삼	12가9***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48번길 80, 10*동 80*호(신일동, 한라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80,000)	폐문부재
김*정	14우2***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2*, 30*호(대정동, 금명빌딩)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100,000 (80,000)	폐문부재
(주)한국***	179하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수내동, 성옥빌딩) (성옥빌딩 *층)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80,000)	폐문부재
김*주	32너3***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1257번길 40, 10*동 1***호(낭월동, 석천들마을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100,000 (80,000)	폐문부재

[별첨2]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이*민	45모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편단길 5*~*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100,000	폐문부재
양*영	210모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일로 70, 10*동 40*호(신부동, 천안신부힐스테이트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폐문부재

[별첨3]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명	차량번호	주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신*호	839고7***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북로10번길 **(덕암동)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폐문부재
정*관	173무2***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7길 34, 20*동 100*호(옥정동, 양주옥정신도시 디에트르 프레스티지)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	104,200	폐문부재
차*철	07조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140번길 *-*(야탑동)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폐문부재
최*정	216보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260번길 27, B-2***호(청라동, 청라한신더휴커널웨이)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폐문부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구정 방향과 핵심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조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본청 기구의 신설 및 명칭을 변경함(안 제4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1) 신설: 전략사업단, 도시사업과, 주차관리과

2) 명칭 변경

- (국 단위) 경제환경국 → 기업경제국

- (과 단위) 인구정책과 → 미래교육과, 어르신장애인과 → 노인장애인과,

경제과 → 기업에너지과, 자원농생명과 → 경제산업과, 신청
사건립과 → 공공청사과

나. 사업소 폐지에 따라 장(章) 및 조문 번호를 정비함(안 제4장, 제16조부터
제1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8월 1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
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실

(전화 : 042-608-6042, FAX : 042-608-3811, E-mail : almost522@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실 담당자 조연진
(전화: 042-608-6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를 “직속기관에”로 한다.

제4조 중 “경제환경국”을 “기업경제국”으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시행계획 및 심사평가”를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인구정책과”를 “미래교육과, 전략사업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약사업 총괄

10. 중장기 구정발전 계획

제8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중전의 제11호) 중 “주민자치”를 “남북교류협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중전의 제12호) 중 “자치분권”을 “주민자치 및 자치분권”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어르신장애인과”를 “노인장애인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6호 중 “어르신”을 “노인”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경제환경국에 두는 과)”를 “(기업경제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제환경국에 경제과, 환경과, 자원농생명과”를 “기업경제국에 기업에너지과, 경제산업과, 환경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환경국장”을 “기업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과학 및 기술”을 “과학·기술 및 상업·공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상업 및 공업”을 “민생고용 및 일자리창출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중 “도시계획과”를 “도시계획과, 도시사업과”로, “신청사건립과”를 “공공청사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5호 중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공원”을 “공원·산림”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산림”을 “대청공원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제20호 및 제2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0호(중전의 제21호) 중 “주택관리”를 “공동주택 및 주택관리”로 하며,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사항

22. 청사관리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23. 구 본청 등 영선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 중 “교통과”를 “교통과, 주차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 11호 중 “관리”를 “구성·운영·관리”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사업소”를 “하부행정기관(동)”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 앞의 “제5장 하부행정기관(동)”을 삭제한다.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3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구 본청의 국장, 실·과장의 직급과 <u>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u> ,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 ---- <u>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u> <u>장의 직급</u> ----- -----.
② <u>직속기관 및 사업소의</u> 과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u>직속기관에</u> ----- ----- -----.
제4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감사실, 미래전략국, 행정자치국, 복지돌봄국, <u>경제환경국</u> , 도시녹지국, 안전교통국을 둔다.	제4조(실·국의 설치) ----- ----- ----- ----- <u>기업경제국</u> ----- ----- --.
제5조(기획실)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기획실)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평가</u>	5. <u>주요업무 계획에 관한 사항</u>
6. <u>공약사업 총괄</u>	<u><삭 제></u>
7. ~ 13. (생략)	6. ~ 12. (현행 제7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제7조(미래전략국에 두는 과) ① 미래전략국에 <u>인구정책과</u> , 문화관광체육과, 미디어홍보과, 도	제7조(미래전략국에 두는 과) ① ----- ----- <u>미래교육과, 전략사업단</u> -----

서관운영과를 둔다. ② 미래전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 략) 3. <u>일자리창출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4. <u>민생고용에 관한 사항</u> <신 설> <신 설> 5. ~ 10. (생 략) 11. ~ 24. (생 략) 제8조(행정자치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②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11. <u>주민자치에 관한 사항</u> 12. <u>자치분권에 관한 사항</u> 13. ~ 23. (생 략) 제9조(복지돌봄국에 두는 과) ① 복지돌봄국에 통합돌봄과, 생활보장과, <u>어르신장애인과</u>, 가족친화과를 둔다. ② 복지돌봄국장은 다음 사항을	-----. ② -----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9. <u>공약사업 총괄</u> 10. <u>중장기 구정발전 계획</u> 3. ~ 8. (현행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11. ~ 24. (현행과 같음) 제8조(행정자치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0. (현행과 같음) 12. <u>남북교류협력</u>----- -- 11. <u>주민자치 및 자치분권</u>---- -- 13. ~ 23. (현행과 같음) 제9조(복지돌봄국에 두는 과) ① ----- ----- <u>노인장애인과</u>----- -----. ② -----
--	--

분장한다. 1. ~ 5. (생 략) 6. <u>어르신</u> 및 장애인에 관한 사항 7. ~ 10. (생 략) 제10조(<u>경제환경국에 두는 과</u>) ① <u>경제환경국에 경제과, 환경과, 자원농생명과, 위생과를 둔다.</u> ② <u>경제환경국장</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5. <u>과학 및 기술</u>에 관한 사항 6. <u>상업 및 공업</u>에 관한 사항 7. ~ 16. (생 략) <u><신 설></u> 17. ~ 23. (생 략) 제11조(<u>도시녹지국에 두는 과</u>) ① <u>도시녹지국에 도시계획과, 공원 녹지과, 주택경관과, 신청사건립과를 둔다.</u> ② <u>도시녹지국장</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6. <u>노인</u> ----- -- 7. ~ 10. (현행과 같음) 제10조(<u>기업경제국에 두는 과</u>) ① <u>기업경제국에 기업에너지과, 경제산업과, 환경과-----.</u> ② <u>기업경제국장</u>----- -----. 1. ~ 4. (현행과 같음) 5. <u>과학·기술 및 상업·공업</u>----- 6. <u>민생고용 및 일자리창출 지원</u>----- 7. ~ 16. (현행과 같음) 17. <u>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u> 18. ~ 24. (현행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와 같음) 제11조(<u>도시녹지국에 두는 과</u>) ① ----- <u>도시계획과, 도시사업과----- 공공청사과</u> -----. ② ----- -----. 1. ~ 4. (현행과 같음)
---	---

5.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
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
업에 관한 사항

<신 설>

7. (생 략)

8. (생 략)

9. 공원에 관한 사항

10. 산림에 관한 사항

11. ~ 19. (생 략)

20.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21.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22. (생 략)

<신 설>

제12조(안전교통국에 두는 과) ①
안전교통국에 재난안전과, 건설
과, 교통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11.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
항

5. 개발제한구역 -----

<삭 제>

7.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7호와 같음)

8. (현행과 같음)

9. 공원·산림----

10. 대청공원 관리--

11. ~ 19. (현행과 같음)

<삭 제>

20. 공동주택 및 주택관리----
--

22. 청사관리 및 시설관리에 관
한 사항

21. (현행 제22호와 같음)

23. 구 본청 등 영선에 관한 사
항

제12조(안전교통국에 두는 과) ①

-- 교통과, 주차관리과-----.

②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조성·운영·관
리-----
--

12. ~ 14. (생 략)

제4장 사업소

제16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
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
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
다.

제17조(소장) 시설관리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시설관리사업소
의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본청 외 공공건축물에 관한
사항
2. 공공건축물 신축 및 기능보
강 등에 관한 사항
3. 주관부서 계획에 따른 공공
건축물 건축·공사감독에 관
한 사항
4. 이관된 공공건축물 유지보수
에 관한 사항
5. 대청공원 및 주변 습지 등 유
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

12. ~ 14. (현행과 같음)

제4장 하부행정기관(동)

<삭 제>

<삭 제>

<삭 제>

<u>6. 대청문화전시관 등에 관한</u> <u>사항</u> <u>제5장 하부행정기관(동)</u> <u>제19조</u> ~ <u>제21조</u> (생략)	<u><삭제></u> <u>제16조</u> ~ <u>제18조</u> (현행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채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

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하위직급 직원의 사기진작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19명으로 함(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793명 → 798명

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2).

다. 정원 총수 조정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실

(전화 : 042-608-6042, FAX : 042-608-3811, E-mail : almost522@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실 담당자 조연진 (전화: 042-608-6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793명”을 “798명”으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2% 이내	30% 이내	6% 이상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20% 이내	20% 이내	20% 이내	40% 이내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819				
정무직	소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소계	813				
	3급	1	1			
	4급	7	6		1	
	5급	49	30	3	4	12
	6급 이하	756				
별정직	소계	5				
	5급 상당	1	1			
	6급 상당	1	1			
	7급 상당	1	1			
	8급 상당	2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 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 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814명 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819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u>793명</u>	1. ----- <u>798명</u>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5급 2명, 8급 3명 증원
- 관련조문: 제2조 및 안 별표 3

3. 비용추계 전제

- 비용 추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함.
- 매년 인건비 2.16% 인상으로 추계함

4.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계
총비용	73,392	299,911	306,389	313,007	319,768	1,312,467
세입	-	-	-	-	-	-
세출	73,392	299,911	306,389	313,007	319,768	1,312,467

※ 1차년도는 3개월(2026. 10.~12.) 반영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산출근거: 2026년 본예산 기준(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포함)
- 산출내역: ㉠ x 2명=175,796천원, ㉡ x 3명=117,774천원

구분	5급㉠	8급㉡
연봉액(단위: 천원)	87,898	39,258

6. 재원조달 방안

가.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계
합 계	73,392	299,911	306,389	313,007	319,768	1,312,467

나.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자체수입 조달

7. 부대의견 : 인력 재배치를 우선하고 필요 최소 인원만 증원

8. 협의사항 : 해당없음

9. 작성자 : 기획실장 고영각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

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